

한국체육대학교 연구년제교수 규정

제정	2001. 9. 1.	규칙 제350호
개정	2003. 6.27.	규칙 제401호
	2010. 3.10.	규칙 제529호
	2011.11.15.	규칙 제576호
	2013.10.25.	규칙 제633호
	2015. 6.25.	규칙 제674호
	2015. 8.28.	규칙 제693호
	2018.12.17.	규정 제77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연구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 제1조의2(연구교수의 구분)** ① 연구교수는 과제연구교수와 자율연구교수로 구분하고, 과제연구교수는 국내연구교수와 국외연구교수로 구분한다.
② 과제연구교수는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연구결과의 게재나 출판의 의무가 부과되는 연구교수를 말한다.
③ 자율연구교수는 국내·외에서 연구한 결과의 게재나 출판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연구교수를 말한다.

제2조(자격) 연구교수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 전임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2. 정년퇴직까지 재직 잔여연수가 5년 이상인 자. 다만, 재직기간 중 연구년제 미 실시 교원에 한하여 정년퇴직까지 재직 잔여연수가 3년 이상인 자 <개정 2018.12.17.>
3. 최근 5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파견, 교환, 휴직 포함)을 한 사실이 없는 자(1년 연구교수)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동 사실이 없는 자(6개월 연구교수)
4. 최근 2개 학기 동안 강의 책임시수를 초과한 자
5. 3년 평균 전임교원업적평가 점수가 120점 이상인 자(과제연구교수에 한함)
6.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선발)** ① 연구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소속 학과장과 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연구교수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를 산학 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산학협력단장은 교학처장과 협의를 거쳐 대학 운영상 지장이 없는 자를 다음 학기 개시 5개월 전까지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연구교수는 제2항의 추천자 중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④ 연구교수로 선발된 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포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연구교수 선발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포기하는 자
2. 연구교수 선발 이후 장기요양이 필요한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포기하는 자
3.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안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선발제외) ① 연구교수 신청서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연구비를 지원받고 기한 내에 연구비 정산서 및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② 연구교수 선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포기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선발에서 제외한다.

제5조(기간) 연구교수의 연구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

제6조(인원) 연구교수의 수는 전임교원 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제7조(평가기준) 과제연구교수 선발 평가는 별표 1에 따라 평가하고, 자율연구교수 선발 평가는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연구계획서의 변경) 연구교수가 부득이 당초의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 종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신분 및 처우) ① 연구교수는 연구기간 중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 과제연구교수에게는 평상 근무시의 보수와 제 수당을 지급한다.

③ 자율연구교수에게는 연구결과의 게재나 출판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각종 교내 연구비 지원신청을 제한하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복무) ① 연구교수는 타 기관에 출장할 수 없으며, 정부,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상임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이나 담당 교과목과 관련된 국내·외 타 대학교, 연구기관, 학술단체, 체육단체에서의 연구와 특강은 제한하지 않는다.

② 총장은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연구 중인 연구 교수에게 5학점 이내에서 본교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연구교수는 연구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연구교수 연구비 집행내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기간의 2배 이상을 본교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연구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④ 과제연구교수의 연구실적물은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SCI(SSCI)급, SCIE(SSCIE)급의 국제 전문학술지에 2년 이내에 게재하거나 저서로 출판하여야 하며, 개인발표회로 대체할 경우 발표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교수에 대하여는 향후 본교 학술연구비, 해외장기연수 및 연구교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며, 해당교수는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를 반납하고 연구실적물을 제출한 경우 본교 학술연구비 지원 사업 참여, 해외장기연수 및 연구교수 지정이 가능하다. <개정 2018.12.17.>

⑥ 과제연구교수가 게재하는 논문의 첫 장 여백 또는 저서 등에 “이 ○○는 해당년도 한국체육대학교 연구교수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비) 과제연구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국내연구자, 국외연구자로 분류하여 지원하되, 6개월 과제연구교수에게는 연구비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기간연장에 따른 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2조(취소) 연구교수가 신청서의 목적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본교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경우 총장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교수 선발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350호, 2001.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 9.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한국체육대학교연구교수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중 제2조 제1항의 정년퇴임 근무잔여년수 적용은 시행일 기준으로 2001년 1년 이상, 2002년 2년 이상, 2003년 3년 이상, 2004년 4년 이상, 2005년 5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제6조 중 평가기준란의 교수업적점수는 2003. 1학기 연구년제 교수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401호, 2003. 6.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학년도 연구교수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529호, 2010. 3.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76호, 2011. 11.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633호, 2013. 10.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74호, 2015. 6.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93호, 2015. 8.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73호, 2018. 12.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제연구교수 선발 평가표

구 分	점 수	평 가 기 준							
본교 재직년수 (과제연구교수 기 수혜자는 과제연구교수 이후부터 계산)	20	20년 이상	17년 이상	14년 이상	11년 이상	8년 이상	5년 이상		
		20	17	14	11	8	5		
연구실적(등재후보지 이상 논문제재실적: 최근 3년간)	10	300%이상	200%이상		100%이상		100%미만		
		10	7		4		0		
전임교원 업적평가 점수	30	(연구업적점수/지원자 중 최고점수) × 50 * 이론, 전문실기를 구분해 평가함. * 3년 평균 업적평가점수 적용							
과거 10년간 연구교수 수혜 회수	10	없음			1회 이상				
		10			5				
심사위원 평가점수1 (연구계획서 점수) [최고, 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한 평균: 이하 동일]	10	A	B	C	D	E			
		10	8	6	4	2	연구계획의 적합성(2점), 창의성(2점), 논리성(2점), 연구방법의 타당성(2점), 학문발전 및 기여 가능성(2점)		
심사위원 평가점수2 (교내 봉사활동이나 위원회/TF팀 활동 실적: 최근 3년간)	10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심사위원 평가점수3 (근무의 성실성과 복무 자세: 최근 3년간)	10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합 계	100								

[별표 2]

자율연구교수 선발 평가표

구 분	점 수	평 가 기 준				
본교 재직년수 (8년 미만 0점)	20	20년 이상	17년 이상	14년 이상	11년 이상	8년 이상
		20	16	12	8	4
교내 연구과제 수혜 회수(최근 3년간)	20	없음	1과제	2과제	3과제	4과제 이상
		20	16	12	8	4
연구년제 교수 수혜 회수(재직 기간)	20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20	16	12	8	4
심사위원 평가점수1 (교내 봉사활동이나 위원회/TF팀 활동 실적: 최근 3년간) [최고, 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한 평균: 이하 동일]	20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16	12	8	4
심사위원 평가점수2 (근무의 성실성과 복무자세: 최근 3년간)	20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16	12	8	4
합 계	100					

[별지 제1호서식]

과제연구교수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학과	성명	
	전공		담당과목	최초발령	년 월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제2조 3항)	기간 (~부터 ~까지)	장소	최근 2학기 강의 시수	20 학년도 제 1 학기	20 학년도 제 2 학기
				주당 시간	주당 시간
등재후보지 이상 연구실적 (최근 3년간)	총 %		과거 10년간 연구년제교수 수혜 회수	총 회	
교내 봉사활동, 위원회/TF팀 활동 실적* (최근 3년간)	총 회 (증빙서류는 첨부 제출)		교내 상별 현황* (최근 3년간)	총 회 (증빙서류는 첨부 제출)	
연구년 기간	. 학기 ~ . 학기 (총 학기)				
연구년 장소	국내		국외	비고	
연구 주제					
연구 내용					

- 붙임 1. 연구계획서 1부(국외연구교수는 과견연구기관의 초청장과 공동연구자와의 공동연구계획서 및 공동연구수락서 포함)
 2. 위 별표(*) 기재사항 등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끝.

이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한국체육대학교 연구년제교수규정에 따라
과제연구년제 교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학 과 장 : (인)
 학 장 : (인)
 교 학 처 장 :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붙임자료1]

과제연구교수 연구계획서

1. 연구 과제명 :

2. 연구의 필요성 :

3. 연구의 목적 :

4. 연구방법 및 내용 개요 :

5. 연구일정 및 세부계획 :

6. 소요경비의 부담 방법

가. 본인 부담액 :

나. 외부(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지원액

다. 대학지원액 :

라. 합 계 :

7. 소요예산 산출내역(서식 : 별첨)

8. 기대되는 성과 및 활용 방안 :

9.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1호서식 붙임자료2]

항 목	금액단위 (단위:천 원)	산출기초(단위:원) <예시>	비고
①인건비적경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조원수당 	
②연구활동 경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비 • 연구회의비 • 여비 	
③직접성 경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연구비 • 문헌 및 재료구입비 • 장비사용료(임차료) • 연구기기비 • 논문게재료 및 특허출원비 	
④연구운영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 • 공공요금 등 잡비 	

[별지 제2호서식]

과제연구교수 결과보고서

연구자	소 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외부연구비 지원 내역 (기관, 금액)				연구수행 장 소	기관명				
					연구부서				
연구기간	. ~ .				본교지원금	원			
연구결과 개 요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	학술면								
	경제 및 산업면								
제재학술지 (발표 사항)	학술지명				학술지등급 (KCI, SCIE, SCI)				
	권 호			발행년월일	. . .	면수			
참고 및 견의 사항									

붙임 : 학술발표(제재 및 출판, 공연 등) 증빙자료 부

학년도 과제연구교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교수 :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과제연구교수 연구비 집행내역서

소속		전공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장소							
연구기간	. . ~ . . (개월)			지원금액			
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집행계획액	집행액					
계							

년 월 일

연구교수 :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과제연구교수 계획 변경신청서

소속	학과	직급	성명
연구계획변경 신청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연구기간	~	~	
연구과제명			
연구구분 (장 소)			
변경사유			

※ 변경사유는 가급적 상세히 기재

위 본인은 학년도 과제연구교수로 연구수행중 상기와 같은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자율연구교수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학과	성명		
	전공		담당과목	최초발령		년 월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제2조 3항)	기간 (~부터 ~까지)	장소	최근 2학기 강의 시수	20 학년도 제 1 학기	20 학년도 제 2 학기	
				주당 시간	주당 시간	
교내 연구과제 수혜 회수 (최근 3년간)	총 회		연구년제교수 수혜 회수 (재직 기간)	총 회		
교내 봉사활동, 위원회/TF팀 활동 실적* (최근 3년간)	총 회 (증빙서류는 첨부 제출)		교내 상별 현황* (최근 3년간)	총 회 (증빙서류는 첨부 제출)		
연구 기간	. 학기 ~ . 학기 (총 학기)					
연구 장소	국내		국외		비고	
연구 주제						
연구 내용						

- 붙임 1. 자율연구교수 연구계획서 1부(별지5호서식 붙임자료1)
 2. 위 별표(*) 기재사항 등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끝.

이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한국체육대학교 연구년제교수 규정에 따라
 자율연구교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학과장 : (인)
 학장 : (인)
 교학처장 :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붙임자료]

자율연구교수 연구계획서

소속 : _____ 직급 : _____ 성명 : _____

1. 연구 주제 :

2. 연구의 필요성 :

3. 연구 목적 :

4. 연구 내용 :

5. 연구 장소 :

6. 기대되는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 :

7. 기타 사항

[별지 제6호서식]

자율연구교수 연구결과보고서

연구교수	소 속		직 급		성 명	
연구기간	. ~ .			연구장소		
연구활동 및 연구결과 개 요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교내측면					
	학술측면					
참고 및 건의 사항						

붙임 : 증빙자료(연구자료, 수집자료 등. 해외 연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여권 사본 제출)

한국체육대학교 연구년제교수 규정에 따라 자율연구를 수행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교수 : (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자율연구교수 연구계획 변경신청서

소 속	직 급	성 명
자율연구교수 계획의 변경 신청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연구 기간	~	~
연구 장소		
연구 내용		
변경 사유		

※ 변경사유는 상세히 기재

위 본인은 학년도 자율연구교수로 연구활동 중 상기와 같은 사유로 기 제출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